

 외교통상부 <small>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</small>	<h1>보도자료</h1> <h2>PRESS RELEASE</h2>	성숙한 세계국가 <small>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</small>
제11-986호 배포일시 : 2011.11.1(화) 문의 : FTA 정책국 공보·홍보 담당관(FTA정책국 심의관) 김영무(☎:2100-8120)		

**제 목 : “투자자-국가 소송제 문제점은” 한겨례신문 기사(11.1)
관련**

“투자자-국가 소송제 문제점은” 제하 11.1(화) 한겨례신문 기사는 사실 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1. 중재판정부의 공정성

(기사내용)

- “현재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은 8명이지만 미국인은 137명이나 된다”

(사실관계)

-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(ICSID) 협약은 모든 협약 당사국이 중재인 및 조정인 각각 4명(총 8명)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(협약 제13조).
-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ICSID 협약 당사국으로 공히 각각 8명의 후보를 지명해 두고 있음.
- 기사에서 ICSID에서 활동하는 미국인이 137명이라고 한 것은 현재 까지 제기된 ISD 사건 총 390건중 미국(투자자 제소 또는 정부 피소)이 관여된 사건이 123건에 달하는데 당사자(제소 투자자 또는 피소 정부)가 중재인 1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많은 미국인이 활동했기

때문임.

2. 미국의 ISD 사례 관련

(기사내용)

- “미국기업, 상대국 제소건수중 패소 20%뿐”
 - “현재까지 미국 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는 모두 108건인데, 이 가운데 패소한 것은 22건뿐이다.”

(사실관계)

- 유엔무역개발위원회(UNCTAD)의 투자자-국가 분쟁 통계(국제투자조약에 근거한 분쟁, 2010년말 기준)에 따르면, 미국 투자자가 외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사례는 총 108건이며, 최종판결이 난 55건 중 미국 투자자는 22건(20.4%)을 지고, 15건(13.9%)을 이겼음.
- 기사에서 패소가 20%뿐이라는 주장은 마치 미국 투자자가 ISD 사건의 80%를 이긴 것처럼 오도하고 있음(실제 승소율은 13.9%에 불과).

3. 사법주권 훼손 주장

(기사내용)

- “검찰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도 예외 대상이 아니다.”

(사실관계)

- 검찰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도 ISD 대상은 될 수 있으나, 실제로 중재 판정부가 국내사법판정을 심리하게 되는 경우는, 국내사법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 등 외국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(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부인, 정당한 변론권의 박탈 등 재판 절차를 명백히 부당하게 진행) 위반하였는지가 그 대상이 되는 때임.

- 법해석 등에 관한 사법 판단 자체가 협정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파악된 바 없음.
- 참고로, 기사에서 예시한 사례들은 각각 ① 동업자의 사기행위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ISD 절차에 제소한 사안으로 더 이상 중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거나(Calmark Commercial Development Inc. v. 멕시코, 2002), ② 법원의 적법한 판결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안(Mondev v. 미국, 1999), ③ 중재협정상의 권리 자체를 무효화한 법원 판결에 대해 협정 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안(ATA Construction, Industrial and Trading Company v. Jordan, 2008)들로서, 동 사례들은 사법 주권 훼손의 예가 될 수 없음.

외교통상부 대변인